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38769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387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185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8. 6. 22.

판결 선고2018. 8. 2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185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7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29.까지 연 6%,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9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며, ③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관련 부분을 다음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8행의 "3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분 ⇨
"38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 제1심판결 중 7쪽 아래에서 6행의 "6,900,000,000원으로 하는" 부분 ⇨

"6,900,000,000원[원고는 일진건설에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5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7. 1. 17.자 준비서면 2~5쪽 및 원고의 2017. 2. 28.자 준비서면 2쪽 참조)]으로 하는"

다. 제1심판결 중 7쪽 아래에서 4행의 "임시 DPS실 설치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이 22,379,900원인 사실" 부분 ⇨ "임시 DPS실 설치공사대금 22,379,9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보광이엔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일진건설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사 완성이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증축된 공장에서의 의약품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차질을 빚게 되어 267,899,062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 손실을 보광이엔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갑34~37호증 등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보광이엔씨의 공사 중단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부분

가. '임시 DPS실 설치비용'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시 DPS실 설치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 중 10쪽 아래에서 6행부터 12쪽 6행까지의 제3. 가. 4)의 "가) 임시 DPS실 설치비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임시 DPS실 설치비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광이엔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시 DPS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안산공장에 DPS실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가 제품을 출하할 때로 앞당겨졌기 때문인데, 위 개정 규정은 2015. 5. 14. 입법예고 되었다가 2015. 11. 11. 위와 같이 개정된 후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원고도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출하 즉시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이 되기 전에 임시로라도 DPS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처럼 DPS실의 설치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필요하게 된 것인데도, 원고와 보광이엔씨가 위 개정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도 있기 전인 2015. 3. 10. 안산공장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범위에 DPS실 설치를 포함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설령 DPS실의 설치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광이엔씨가 위 2016. 1. 1. 이전에 DPS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거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그 설치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원고와 보광이엔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사기간을 2015. 3. 16.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면서도, 그 중 DPS실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사기간의 종기 이전인 2016. 1. 1.까지 완성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초 DPS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던 장소는 증축 부분이 아니라 리모델링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인데(갑26, 27, 57, 58호증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예정공정표(을9호증)에 의하면, 13개월의 공사기간 중 1~6개월 동안은 증축 공사를 한 다음, 7개월째에 이르러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8개월째부터 이를 시공하며, DPS실 설치 공사 중 주된 부분인 공조 덕트 공사는 9개월째 2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무리

빨라도 2015. 12. 11. 이후에야 시작될 예정이었던 DPS실 설치 공사가 2016. 1. 1.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④ 결국 원고는 2015. 3. 10. 보광이엔씨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DPS실 설치 부분을 공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이를 포함시키면서도 그 설치기한을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6. 5. 31.과 달리 정하지 않았다가, 2015. 5. 14. 위 입법예고에 따라 DPS실을 2016. 1. 1.까지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생겼는데, 2015. 5. 30.경 보광이엔씨가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8. 28. 일진건설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둘러 그 공사범위에 임시 DPS실 설치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 설치기한도 2016. 1. 1.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는 2015. 9. 1.경 F로부터 DPS와 서버 설치에 관한 견적을 받은 바 있는데(갑18호증, 을10호증), 바로 그때가 원고와 일진건설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인 8. 28.의 직후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임시 DPS실 설치 공사 부분의 도급 경위를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나. '합계' 및 '소결론' 부분

나아가 전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1심판결 중 12쪽 아래에서 4행부터 13쪽 1행까지 제3. 가의 "6) 합계" 부분 및 13쪽 2행부터 8행까지 제3의 "나. 소결론" 부분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공사대금 증가분 22,620,100원, 2) 현장정리비용 3억 1,680만 원, 3) 현장관리비용 36만 원, 4) DPS 설비 이전비용 600만 원, 5) 원고가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안정성시험 위탁비용 6,914,000원, 합계 352,694,100원(= 22,620,100원 + 3억 1,680만 원 + 36만 원 + 600만 원 + 6,914,000원)의 보증채무금에서 6) 원고가 보증채무금의 수령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2016. 3. 8.자 304,2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479,100원(= 352,694,100원 - 304,2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위 나머지 보증채무금 48,479,100원과 이에 대한 위 2016. 4.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7. 1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73,401원[= 48,479,100원 × (1 + 71일/365일)년 × 6% + 48,479,100원 × (15일/365일)년 × 15%]의 합계 52,252,501원(= 48,479,100원 + 3,773,401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을5호증), 이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득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가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포함시키지도 않은 이상, 그 지급 사실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바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불복의 한도, 즉 임시 DPS실 설치비용 223,379,9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 48,479,100원 부분의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제1심판결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6%가 아니라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병원

판사방웅환